참고

참고 1. 정보제공자·정보수신자 범위

가. 정보제공자* 범위

* 신용정보법에 따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

① 금융기관

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, 금융지주회사,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주택금융공사, 금융투자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·지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,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,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,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, 보험회사, 여신 전문금융회사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, 한국무역보험공사, 예금보험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, 공제조합, 국채등록기관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신용회복위원회, 근로복지 공단, 소프트웨어공제조합, 엔지니어링공제조합, 정리금융회사, 체신관서, 전기공사공제조합, 주택 도시보증공사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. 중소기업 중앙회, 한국장학재단,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, 서민금융진흥원,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, 자본재공제조합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, 농업현동조한자산관리회사

② 공공기관

행정안전부, 국세청, 관세청, 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, 조달청, 공무원연금공단, 주택도시공사, 주택 금융공사, 근로복지공단, 신용회복위원회,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,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

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

- ③ 전자금융업자
- ④ 한국거래소, 예탁결제원
- ⑤ 신용정보회사. 채권추심회사.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
- ⑥ 겸영여신업자
- ⑦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
- ⑧ 한국전력공사
- ⑨ 한국수자원공사

나. 정보수신자* 범위

- * 신용정보법에따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에 의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는 자
- ① 신용정보주체 본인
- ②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
- ③ 금융기관

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, 금융지주회사,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주택금융공사, 금융투자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·지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,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,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,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,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, 보험회사, 여신 전문금융회사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, 한국무역보험공사, 공제조합, 국채등록기관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신용회복위원회, 근로복지공단, 소프트웨어공제조합, 엔지니어링 공제조합, 정리금융회사, 체신관서, 전기공사공제조합, 주택도시보증공사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장학재단,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, 서민금융진흥원,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, 자본재공제조합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,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

- ④ 개인신용평가회사
- 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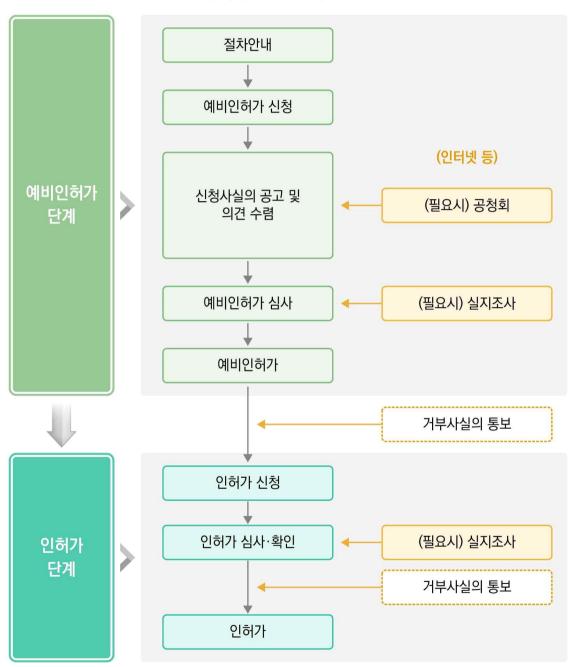
참고 2.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 허가요건 및 절차

○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해당 업의 수행을 위해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 금융위원회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(신용정보법 제4조)

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에 필요한 정보처리·정보통신설비 요건 (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2)

| 구성 | 세부 요건 |
|--------|---|
| 시스템 구성 | 1.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가. DB서버, 통신서버, 웹서버, 보안서버 등 서버 시스템 나. 저장장치,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 다.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S/W 프로그램 2. 백업 및 복구시스템을 갖출 것 3. 내외부 네트워킹 등 통신시스템 구성 등을 갖출 것 |
| 보안체계 | 1. 침입차단시스템, 침입탐지시스템,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, 바이러스 및 스파이 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을 갖출 것 2.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·서비스의 이용 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3. 직무분리 기준을 수립할 것 4.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마련할 것 5. 비상계획, 재해복구 훈련 실시 체계를 갖출 것 6. 서버,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 7.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 8.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기록 유지할 것 9.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하고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같은 규정 제14조의2 제1항·제2항·제8항을 준용한다.) 10. 안전한 물리적 보안설비(통신회선 이중화, CCTV 등)를 갖출 것 11. 안전한 백업대책을 갖출 것 12. 안전한 데이터 암호화 처리방침 및 암호처리 시스템 구축 할 것 13. 외부에서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접속 및 인증수단(VPN 등)을 적용할 것 |

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등의 절차 (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1)



※ 예비인허가, 인허가 시 구비 서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「별표1의2. 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, 채권 추심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등의 신청서류(제5조제2항 관련)」참조

참고 3. 주요 인증 규격(가이드라인)의 인증 수준 요구 현황

- 미국 NIST, 디지털 신원 가이드라인(SP 8000-63-3)
 -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등에는 다중 인증에 해당하는 AAL 2 이상에 해당하는 인증 수단 적용

| 보증 수준 | 허가 인증 수단 (예시) |
|----------------|---|
| AAL* 3 (높음) | OTP + 다중 요소 공개키 인증서(예: 전자서명 생성시 비밀번호 요구) Representation OTP + 다중 요소 공개키 인증서(보안 영역에 저장) OTP + 공개키 인증서 + 비밀번호 |
| AAL 2 | 다중 요소 OTP(예: OTP 생성시 비밀번호 요구) 다중 요소 공개키 인증서 비밀번호 + 보안카드/OTP/공개키 인증서 |
| AAL 1 (낮음) | • 비밀번호, 보안카드, OTP, 다중 요소 OTP, 공개키인증서 등 |

^{*} AAL(Authentication Assurance Level) - 인증 보증 수준

○ EU, PSD2 하위 강력한 고객인증(SCA) 등에 대한 규제기술표준(RTS)

- 지급자(고객)가 자신의 온라인 지급계좌에 접근(지급지시, 거래내역 조회 등)하는 경우 다중 인증을 적용하도록 규정

○ ISO/IEC:29115 실체 인증 보증 프레임워크 표준

- 민감 개인정보 및 개인 경제활동 정보 접근시 다중 인증에 해당하는 LoA 3 이상에 해당하는 인증 요구사항 적용

| 보증 수준 | 인증 요구사항 |
|----------------|--|
| LoA* 4 (높음) | • H/W 암호화 기반 인증수단 (전자서명 적용) • 대면인증 필수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신원확인 |
| LoA 3 | 지식인증과 소유인증 필수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엄밀한 신원확인 |
| LoA 2 | 소유 기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수단 필수신원의 신뢰성 있음(일반적인 수준의 신뢰수준) |
| LoA 1 (낮음) | • ID/PW, 단일 요소 인증 • 신원확인절차가 없거나 신원의 신뢰성을 요하지 않음 |

^{*} LoA(Level of Assurance) - 인증 보증 수준

[※] 출처 - 공공웹사이트 인증 수단 소개서(행정안전부, 2018.9.)

참고 4.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

-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: 고객이 실명확인증표(원본)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. 파일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
- ② **영상통화** :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
 - * 고객이 위협이나 강박상태에 있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비대면 방식을 통한 추가 확인이나 대면확인 요구 가능
-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: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카드. 통장, OTP,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
- ④ 기존계좌 활용: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있는 고객의 기존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*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
 - * 예 : 1 고객이 금융회사가 지정한 금액을 이체. 2 금융회사가 기존 계좌에 소액이체 후 고객이 해당 자금을 금융회사에 재이체. ③고객의 기존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액이체. 등의 방식을 통해 1회용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고 고객이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
- ⑤ **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*** : 금융회사에 생체정보**(이하 "바이오정보"라 한다)를 등록한 고객은 사전에 대면 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바이오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.
 - * 바이오정보 외에 새로운 방식의 실명확인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불필요하고.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가능
 - ** 지문, 정맥, 얼굴(안면), 홍채, 음성, 서명, 키스트로크, 보행 등 개인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을 디지털화한 정보

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

- ⑥ **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**: 신용카드, 공동인증서, 아이핀(I-PIN),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, 아이디·비밀번호, 전화번호 활용
- ① **다수의 고객정보 검증**: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(예: 전화번호, 주소, 이메일, 직장정보 등)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

참고 5.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자용 접근토큰 관리 자체점검표

| 점검항목 | | 점검결과 (O/X)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
| 1.규격 및 유효기간 | 1-1. 접근토큰 표준 규격(JWS)을 준용 | |
| | 1-2. 리프레시토큰의 유효기간을 실제 전송요구 종료시점과 같거나 길게 설정하여 발급 | |
| | 1-3. 정보제공API 접근토큰의 유효기간을 90일 이내로 설정하여 발급 | |
| | 1-4. 정보제공API 리프레시토큰의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하여 발급 | |
| | 1-5. 지원API 제공용 접근토큰의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하여 발급 | |
| | 1-6. 접근토큰 발급·재발급 시 전송요구 동의기간을 참고하여 유효기간을 알맞게 설정하여 발급 | |
| 2.발급관리 | 2-1. 실제로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에 해당하는 접근토큰과 리프레시토큰을 발급 | |
| | 2-2. 정보주체별로 중복된 접근토큰과 리프레시토큰이 발급되지 않도록 발급시 확인·관리 | |
| | 2-3. (개별인증 시) 인가코드 발급 시 client_id, redirect_uri 검증을 수행 | |
| | 2-4. (개별인증 시) 인가코드의 유효시간 10분 이내로 설정 | |
| | 2-5. 동일 정보제공자라 하더라도 복수개의 업권에 대해서 각 업권별로 접근 토큰을 발급·관리 | |
| 3.갱신 및 폐기관리 | 3-1. 전송요구 유효기간 동안 리프레시토큰을 무단 변경하지 않음 (갱신·삭제 등) | |
| | 3-2. 전송요구 변경에 따라 새로운 접근토큰과 리프레시토큰 발급 시 기존 접근 토큰과 리프레시토큰을 즉시 폐기 | |
| | 3-3. 전송요구 철회시 접근토큰과 리프레시토큰을 즉시 폐기 | |
| 4. 정보제공 | 4-1. 정보제공 API 응답시 타인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접근토큰 중복여부, 유효성을 검증 | |
| | 4-2. 전송요구 기한 만료 이후 정보제공 API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송요구 종료시점을 검증(40106 에러코드 관련) | |